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rotection System for Public Interest Reporters

Young-Woo Lee\*, Su-Yeon Jang\*\*

\*Professor, Dept. of Police & 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Korea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Social Security, Gwangju, Korea

### [Abstract]

Korea enacted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in March 2011 to protect whistleblowers from acts of infringement of public interest in the private sector. Most acts of infringement of the public interest are carried out secretly within the organization, which is known to the outside world by reports from members of the organization who are well aware of the problems within the organization. However, whistleblowers are at a disadvantage due to reporting and are reluctant to report. In addition, measures are needed to strengthen institutional mechanisms such as confidentiality,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sponsibility, and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measures to effectively protect reporters due to lack of practical protective measures. Therefore, practical protection measures for whistleblowers are needed in line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whistleblowers, and measures to expand the corresponding compensation system will also be need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review the main contents of the current system for protecting whistleblowers in Korea and suggest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for protecting whistleblowers.

▶ **Key words:**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Whistleblow, Public Interest Reporter Protection Act, Protection Measures, Compensation System

### [요 약]

우리나라는 2011년 3월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행위로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익침해행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의 신고로 인하여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또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비밀보장, 신분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의 취지에 맞게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제어:** 공익신고자,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보호조치, 보상체계

- 
- First Author: Young-Woo Lee, Corresponding Author: Su-Yeon Jang
  - \*Young-Woo Lee (lawking77@kwu.ac.kr), Dept. of Police & 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 \*\*Su-Yeon Jang (mikey86@naver.com), Korea Institute for Social Security
  - Received: 2020. 09. 22, Revised: 2020. 10. 14, Accepted: 2020. 10. 22.

## I. Introduction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제정되었다.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가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은밀하고 지능화되어 감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특히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구체적인 증거를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적발하거나 시정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로 인하여 해고나 파면 등 신분상의 불이익 및 근무처 변경, 승진에서의 탈락 등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또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1].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에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통하여 공익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공익신고의 활성화와 공익침해행위의 방지에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익신고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와 지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및 보상체계 등의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Protection System for Whistleblowers of Acts of Infringement of the Public Interest

### 1. Requirements for Protection

#### 1.1 Subject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284개의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0년 11월 20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182개의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 대상을 467개로 확대하였다. 이는 그동안 시각지대에 있었던 신고자들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1.2 Reporting Institution

공익신고 기관이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등 4개의 기관을 공익신고 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도 국회의원, 공공단체 등 2개의 기관을 공익신고 기관으로 규정하여 총 6개의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 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조직 내부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으며, 감독기관과 담당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조사 및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1.3 Reporting Method

공익신고의 방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술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동법 제8조의2에 따라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하여 비실명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다. 변호사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자라는 입증이 가능한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Main Protection Measures

### 2.1 Confidentiality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으로써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고 있으며[2], 이와 더불어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과정 등에 협조한 사람의 비밀도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

용도 조사한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밀보장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 Personal Protection**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신고자법」 제7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및 신변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이나 귀가 시 동행 및 대상자의 주거에 대하여 주기적인 순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3].

**2.3 Reduced liability**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를 함에 있어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형이나 징계를 감경,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신고 자체가 다른 법령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더라도 법적이나 계약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4]. 또한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4 Prohibit Disadvantageous Measures**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 등에게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서 ①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② 공익신고가 있는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③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④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II. Main Compensation System**

**1. Compensation**

**1.1 Reasons for Payment**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서는 공익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① 벌칙 또는 통고처분 ②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③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④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⑦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을 통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발생하거나 그에 관하여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2 Payment Standard**

공익침해행위 신고 보상금은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보상대상가액의 4~20%를 지급하고,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30억 원에 해당하며 보상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2015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보상금이 목적인 전문신고자의 신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공익신고자로 제한하였고, 이에 보상금 신청은 내부 공익신고자만 가능하다[5].

Table 1. Compensation Calculation Criteria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 원 이하	2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천만 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7천6백만 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 원 초과 ~ 40억 원 이하	2억2천6백만 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 원 초과	3억4천6백만 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1.3 Payment Procedure**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내부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

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림 1의 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이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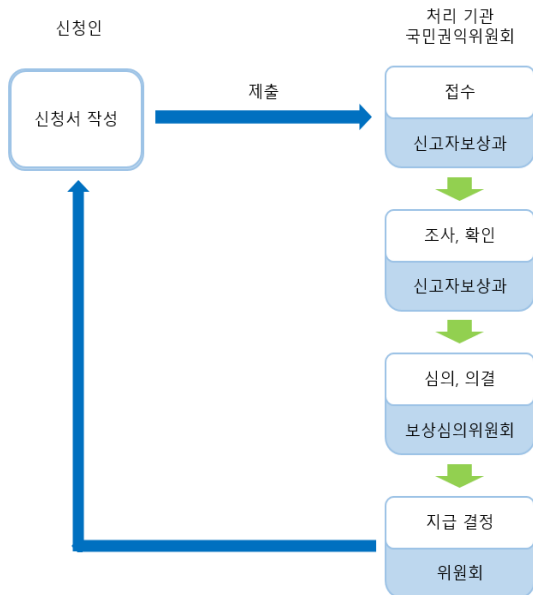


Fig. 1. Compensation Payment Procedure

2. Reward

2.1 Reasons for Payment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①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②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③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④ 과태료,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⑤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2 Payment Procedure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에서 신고자의 신청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상금과는 달리 포상금은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림 2의 절차를 통하여 지급된다. 또한 포상금은 보상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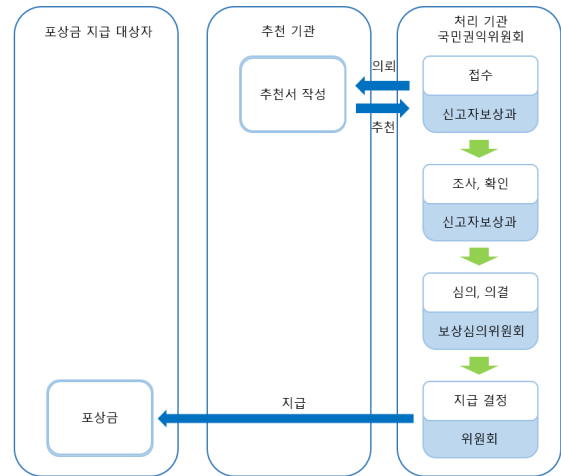


Fig. 2. Reward Payment Procedure

3. Relief money

3.1 Reasons for Payment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에서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① 육체적·정신적인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② 전직이나 파견 근무 등으로 인하여 소요된 이사비용 ③ 원상회복과 관련된 소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④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⑤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다만, 인·허가의 취소나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제외)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신청을 받은 때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2 Payment Procedure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에서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조회한 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며, 그림 3의 절차를 통하여 지급된다.



Fig. 3. Relief Money Payment Procedure

## IV.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Protection System

### 1. Problems of protection system

#### 1.1 The Problem of subject law

현행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개정을 통하여 확대되고 있다. 종래 대상 법률에 해당하는 284개의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해당하는 182개의 법률이 추가되어 467개의 법률이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 이후로 이번 개정안은 대상법률이 가장 많이 추가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고자들도 보호하고자 한다[6].

그러나 기업부패의 내부공익신고자는 법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대표적 기업 범죄인 횡령, 배임 등 모든 형법상 범죄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익신고자가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모두 해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열거주의 방식으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 1.2 The Problem of Protection Measures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서는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개정 전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의 대상인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이나 징계에 대하여 임의적 감면을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형의 임의적 감면뿐만 아니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2017년 개정을 통하여 책임범위를 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공익신고 등을 공익침해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였을 것 ②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사실을 모두 진술하거나 증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③ 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으로 확대하였다[7].

그러나 법적 책임의 문제는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에 해당되어 공익신고자들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다[8].

### 1.3 The Problem of Compensation System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에 의해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치료 등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로 2019년 12월까지 8년 동안 구조금 지급 건수는 총 17건이며, 지급 금액은 총 25,979,890원에 불과하다[9]. 이는 구조금 신청 제도가 존재하지만 공익신고자들이 구조금 신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구조금 신청을 기피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 2. Improvements of protection system

#### 2.1 The Improvement of subject law

대상법률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포괄주의 방식과 열거주의 방식이 있다. 열거주의 방식은 법률의 일괄적용이 어렵고 법의 형평성과 신고자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 등이 여전히 발생한다. 반면에, 포괄주의 방식은 모든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익신고자가 기업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법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포괄주의 방식을 적용하여 형법과 상법 등의 위반사항인 차명계좌, 분식회계, 배임 및 횡령 등 기업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한다. 필요성을 인지할 때마다 특정 법률을 추가하기 보다는 모든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있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10].

#### 2.2 The Improvement of Protection Measures

사회가 고도로 분업화 및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서 조직이나 단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패행위는 조직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렵다. 또한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조속히 제거하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익신고 등과 관련된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 및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을 필요적으로 감경·면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11].

#### 2.3 The Improvement of Compensation System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로 2020년 7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3만 5천 건을 넘고,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수사기관 등 공익신고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도 총 835만 여건에 이르는 등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12].

따라서 공익신고자들이 공익신고 접수 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공익신고자에게 알려 공익신고자가 구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이러한 정보전달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자 한다.

## V. Conclusions

지금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영역의 공익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조치와 보상체계가 필요하며,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민생활의 안정과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조치를 통하여 공익신고자를 효율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등 보상체계를 통하여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익신고 대상을 모든 법령을 적용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확대하여 공익침해행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있어 효과적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체계 확대 방안으로 구조금 지급 강화를 통하여 공익신고자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REFERENCES

- [1] Su-jin Kwon, Sung-hyun Yoon, "A Study on Improvement of Whistleblowing System for Public Interes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eries od research」,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36, 2016.
- [2] Gyung-Seok Kim, "A Study on the whistle-blowing system as the response to corporation's corruption", 「Seoul Law」, Vol. 26, No. 3,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p.463, 2018.
- [3]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Manual for handling Public interest reports and protecting reporters", p.72-73, 2016.
- [4] Beom-seok Lee, "A Study on Improvement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System-Focused on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 Dongguk University Ph.D. thesis, p.26, 2018.

- [5] Su-jin Kwon, Sung-hyun Yoon, "A Study on Improvement of Whistleblowing System for Public Interest",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eries od research」,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43, 2016.
- [6]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Law Subject to Public Interest Reporting Expanded '284→467'", <http://www.acrc.go.kr/acrc/index.do>.
- [7] Hyo-Jong Lee, "A Study on Improvement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ing System",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Master's thesis, p.85-86, 2018.
- [8] Jae-Hak Lee,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r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s Act for the Activation of the 'Public Interest Reporter(or Whistleblower)' System", 「Study of Law」 Vol. 25, No. 1,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p.230-231, 2017.
- [9]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hite Paper", p.196, 2019.
- [10] Eunice K. Ki, "Measures to Encourage Whistleblowing", 「Ewha law journal」 Vol. 19, No. 2, Ewha Women's University Institute of Law, p.302, 2014.
- [11] Seung-Tae Kim, "The Evaluation of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Hongik Law Review」 Vol. 14, No. 2, Hongik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p.596, 2013.
- [12]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Enterprise Guide for the self-prevention of Public Interest Infringement", p.54, 2020.

## Authors



Young-Woo Lee received the Ph.D. degree in Administrative Law From Cheongju University, Korea, in 2009. Dr. Lee was an Expert Advisor to the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Also he is an International

Director to the Korea Institute for Social Security.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t. of Police & Law at Kwangju Women's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Administrative Law and Police Administrative Law.



Su-Yeon Jang received the LL.B degree in Police & Law from Kwangju Women's University, Korea, in 2019. She is currently taking master's course in Police & Law from Kwangju Women's University.

Su-Yeon Jang joined the researcher of Korea Institute for Social Security, Korea in 2019. She is interested in Administrative Law and Police Administrative Law.